

IPE센터 운영규정

2025. 08. 01. 최초제정

2025. 09. 15.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글로컬사업단에 소속된 IPE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사업 및 업무) 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직종 연계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직종 연계교육을 위한 사례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직종 연계교육과 관련된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 대학의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팀원을 둘 수 있으며 팀원은 센터의 사업 관련 교직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제3장 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글로컬사업단장과 센터장을 포함하여 대학의 교직원 및 지자체 또는 산업체 인사 중 총장이 위촉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25.09.15.>
2. 위원장은 글로컬사업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개정 2025.09.15.>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집행, 실적평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직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8조(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9조(재정)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기타 지원금

②재정 관련 제반사항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관리 및 운영지침과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0조(규정 외 사항 처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운영규정과 대학의 관련 지침 등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센터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